웊	사	괏	역	入	분	- 구
	1	O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42 호 2022. 5. 6.(금)

고 시

1
2
가 고시]· 3
및 4
6
····· 7
o
······ 8 ····· 9
······· 9 ᆌ안] ····· 17
·········· 23
열람공고] 24
31
문으로 제출
보
<u>E</u>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9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5. 2.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 (큰돌사방댐 1개소, 큰돌골막이 2개소, 큰돌찰쌓기, 바닥막이 등 사방시설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산94-1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787 m²

나. 기 간 : 2022. 5. 2. ~ 2026.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공원녹지과)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05호

「중산2지구」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2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명칭 : 중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282번지 일원

4.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323필지, 165,462.6 m²

5. 지적확정조서 : 붙임참조

6.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2-241-7285)

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5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5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54호선)사업

나. 명 칭: 국도7호선 접속부 우회전 전용차로 개설공사

-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29-1번지 일원
- 3. 사업규모: (당초) 도로개설(B=3m, L=25m)

(변경) 도로개설(B=3m, L=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5. 사업기간: 2022. 9. 2. ~ 2023.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명세서와 같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0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강동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나. 명 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719,973.8 m²(당초) / 715,485.8 m²(변경)

나. 규 모

(당초) 골프장(18홀, 719,973.8㎡), (변경) 골프장(18홀, 715,485.8㎡)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정면적(m²)	변경면적(m²)
체 육 시 설 용 지	194,834.0	189,297.0
건 축 시 설 용 지	4,930.0	4,930.0
기 반 시 설 용 지	46,256.0	46,256.0
녹 지 용 지	473,953.8	475,002.8
계	719,973.8	715,485.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대표자 백인균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2019. 7. 4. ~ 2022. 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 7.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1>	면 적(m²)			최초	
구분	보 표시 시설명 주류 번호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25	체육시설	골프장	북구 어물동 산43일대	719,973.8	감)4,488	715,485.8	'09.2.19 울고45호	면적 감소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25	체육시설	· 면적감소: 감 4,488 m² - 719,973.8→715,485.8 m²	· GB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0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동대3길 5	호계동 274-7	2022. 5. 6.	건축물 멸실
창좌길 51	시례동 32-2	2022. 5. 6.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 (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5**.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11호

「중산2지구」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고시(수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2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수정)합니다.

2022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명칭 : 중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2.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282번지 일원
- 4.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323필지, 165,462.6㎡
- 5. 지적확정조서 : 붙임참조
- 6.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2-241-7285)

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587호

무단 방치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도로 및 기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소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 구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 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5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5. 5.~2022. 5. 19. (14일간)

2. 처분대상 : 무단 방치 자전거 1대

3. 보관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957-9번지(북구 제설창고)

4. 처분방법 :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

5. 문 의 처 : 북구 건설과(☎ 052-241-787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2 - 600 호

울산시티병원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05. 03.(화) ~ 2022. 05. 13.(금)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 기초금액: 5.750.000원

가. 사 업 명 : 울산시티병원 증축공사

나. 사업주체 : 송은의료재단 시티병원

다. 시 공 자 : 한원종합건설(주)

라. 설계자: (주)엠피티종합건축사사무소

마. 감 리 자 : (주)엠피티종합건축사사무소

바.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7 (연암동 1261-6)

○ 대지면적 : 7.714.00㎡

○ 연 면 적 : 8184,36㎡

○ 규 모: 지하1층 - 지상6층

○ 세 대 수 : 의료시설

○ 공사기간 : 2021. 07.01 ~ 2022. 09. 30(15개월)

○ 허 가 일 : 2021. 05. 11.

○ 착공신고수리일 : 2021. 08. 06.

○ 공 사 비 : 11,485,000,000 원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5,000,000 원

○ <u>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u>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

3. 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정기안전점검	3	5,000,000	5,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			
계	3		5,0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05. 03.(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05. 13.(금) 11: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2. 05. 13.(금)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 (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

2022. 5. 6.(금요일)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 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 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 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2. 05. 13.(금) 11: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 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 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05. 16.(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소: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 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안전점검 수행기 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 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 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 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 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 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영점 =평가점수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0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
합계	100점	

-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u>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u>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 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 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2)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o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 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0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601호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실행력 확보 및 범죄 취약 계층의 방범시 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 추가(안 제2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우선 적용 대상 신설(안 제6조의1)
- 범죄 취약 계층의 방범시설 지원 근거 추가(안 제7조)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안 제8조)
-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2. 5월중

바. 입법예고 : 2022. 5월중

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 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작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우선 적용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구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 3.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 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제17조, 제18조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경

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 5.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 5.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무대비표

혀 颜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 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개 정 안

-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u>주민의</u>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 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 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 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디자인을 말한다.
-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 설>

- 제6조의1(우선 적용 대상) 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 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1. 구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 축물 또는 공간
 - 3.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제7 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 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 례 . 제17조. 제18조 따른 울산 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 5.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 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 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략) <신 설>

<신 설>

사업)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 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 4.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도시환경디 자인 사업
- 5.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침입범 죄 예방을 위한 사업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기준 등은 제8조의 범죄예방 도 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 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 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 2. (생 략)

<신 설>

<u>3</u>. (생 략)

4. (생략)

② (생략)

구청장이 정한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 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 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1. 2. (현행과 같음)
- 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605호

공시 송달 공고

공

하천구역(매곡천)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5. 3. ~ 2022. 5. 17.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	무단점유현황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m²)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미상	미상	불법점용	200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5. 17. (화)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607호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안 및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7 13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m²)	
구분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84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염포동 20-1번지 일원	42,953.5	중 1,067.5	44,021.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4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증 1,067.5㎡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그 H		면 적(m²)		구성비(%	비고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합 계	42,953.5	증 1,067.5	44,021.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2,953.5	감 1,385.0	41,568.5	94.4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452.5	2,452.5	5.6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가) 교통시설
 -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류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기정	소로	3	560	4,965.8	2	473	4,796.8	-	-	-	1	87	169
변경	소로	6	942	7,418.3	3	475	4,942.8	<u>-</u>	-	-	3	467	2,475.5
기정	소로	3	560	4,965.8	2	473	4,796.8	-	-	-	1	87	169
변경	소로	6	942	7,418.3	3	475	4,942.8	- -	-	-	3	467	2,475.5

주)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1	98	10	국지 도로	342 (2)	중2-40	소3-220	일반 도로	양정 일원	'76.4.9 경고62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1	102	10	국지 도로	420 (420)	소로1-98	염포동 961-29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1.3.3 울(북)고19호	
기정	소로	1	103	10	국지 도로	87 (53)	소로1-98	소로3-273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1.3.3 울(북)고19호	() : 구역내 폭원6m편입
기정	소로	3	273	6	국지 도로	87 (87)	소로1-103	염포동 961-18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7.8.24 울(북)고154 호	() : 구역내 폭원2m편입
기정	소로	3	220	6	국지 도로	154 (154)	소1-98	소3-221	일반 도로	심천 지구	′76.4.9 경고62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80	소1-99	소1-101	일반 도로	양정 일원	'76.4.9 경고62호	'20.7.1 울(북)고122호
변경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306 (226)	소3 -22 0	소1-101	일반 도로	양정 일원	'76.4.9 경고62호	노선연장

주) ()은 구역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21	소로3-221	● 노선연장 (B=6, L=80→306m)	• 지구단위계획구역 조건사항에 따라 구역 외 도로의 개설 및 기부채납을 위해 일몰된 소로3-221호선을 일몰 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변경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 설 명	위 치		면	į	적 (r	n²)	최초	비고
丁亚	번 호	시 결 경	T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H1 12
기정	40	공공공지	북구 염포동 961-33일대	2,45	56.6	-	•	2,456.6	'06.4.13 울고 91호	

(2) 공원 결정조서

그ㅂ	도면표시	공 원 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1	m²)	최초	비고
구분	번 호	ठ स उ	세 분	カ ハ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끄
기정	108	-	소공원	북구 염포동 691-55일대	2,292.5	-	2,292.5	'17.8.24 울(북)고154호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1	m²)	최초	비고
丁亚	번 호	기설정	T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H 77.
기정	7	사회복지 시설	북구 염포동 48-6일대	975.6	-	975.6	'11.3.3 울(북)고 19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 T		면 적(m²)			획 :	지		
구분		가구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합		계	37,987.7	감)1,385.0	36,602.7	-	-	ı	-	
기정	_	1B	1,303.0	_	1,303.0	1	1B-1	936.0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건축물	
기정			,		,	2	1B-2	367.0	하천구역	
기정						1	2B-1	29,343.2	공동주택 (공개공지 559㎡포함)	
기정						2	2B-2	975.6	기반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	
기정		2B	22 492 2	2}/07E 0	22 207 1	3	2B-3	44.2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_	∠D	32,482.3	감)275.2	32,207.1	4	2B-4	1,308.7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5	2B-5	535.4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폐지						6	2B-6	275.2	하천구역	
기정						1	3B-1	539.4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2	3B-2	106.8	하천구역	
폐지						3	3B-3	31.2	하천구역	
폐지						4	3B-4	216.9	하천구역	
기정		20	4 202 4	71\1 100 P	2 002 6	5	3B-5	986.7	하천구역	
변경	_	3B 4,202.4 감)1,109.8 3,092.6		3	3B-3	125.0	야신T듹 			
기정						6	3B-6	28.9	기비지서요기(고고고기)	
변경						4	3B-4	20.9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7	3B-7	2 202 5	人고이	
변경						5	3B-5	2,292.5	소공원	

○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또는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구역내 가구 및 획지	• 가구 및 획지 면적 변경	• 구역 변경에 따라 가구 및 획지 번호 변경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ت	구 분	계획내용	비고
		ō	허용용도	В	
		- 4	<u>식</u>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최저층수	-	
-	2B-1	높이	최고층수	20m(-) 이하	층수는 관련법령에 따름
		E	·引 え]	-	
		č	형 태	-	
				-	
		7	건 축 선	-	

○ 건축물의 용도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주거용지(A)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시설	
공동주택용지(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사회복지시설(C)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용도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공개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면적(m²)	비고
기정	_	2B-1	공개공지	302	• 오픈스페이스 및 주민들의
기정	-	2B-1	공개공지	257	편의공간 등을 위한 공개공지

나) 기타 조건사항

구분	도면 번 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1	심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외 도로 등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도로, 소공원, 공공공지, 하천)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시공 및 기부채납 할 것 	'17.8.24 울(북)고154호

- 2. 공람기간: 2022. 5. 6. ~ 2022. 5. 20.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 간)
-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 4. 공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과(☎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608호

계 고 문

보

1. 성 명 : 미상

2.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745-117번지

3. 내 용 : 공유수면 내 불법경작 원상복구 명령

귀하는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울산 북구 1318-5번지 공유수면 내에 경작함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였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22. 5. 17.(화)까지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합니다.

만약 위의 원상복구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